

IMF와 양돈 자조금제도의 법제화

지난해 11월 22일 우리 나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불어닥친 한파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실로 힘든 고통을 주고 있다. 여기에 양돈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 더욱이 수입곡물로 만들어진 배합사료의 의존율이 높고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양돈 산업은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말하자면 환율상승과 이자율상승으로 사료값을 비롯한 동물약품과 축산기 자체의 값은 물론 각종 투입비용이 턱없이 올랐으며, 한편으로는 국민소득의 감소효과로 인해 성장식품인 돼지고기의 수요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수년동안 우리는 심각한 불황의 터널을 지나야 할 것 같다. 임금 동결과 고용축소로 인해 날로 실업자는 늘어날 것이며 국민소득은 더욱 크게 떨어질 것이다. 소득이 줄어들면 소득탄력성이 높은 돼지고기의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돼지의 생산·공급을 동시에 축소하지 않는 한 돼지고기의 소비위축은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돼지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가는 생산두수를 늘리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가격하락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IMF한파가 불어닥친 지난 12월에 두당(100kg) 136천원 까지 떨어졌던 비육돈 값이 1월에는 164천원, 2월에는 200천원 그리고 3월에는 201천원으로 상승하는 회복세를 보이더니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2월과 3월의 가격 상승은 이변이었을까? 아니다. 생산·공급이 비교적 경직적인 양돈업에 있어서 수요측의 급격한 환경변화에서 기인된 결과였다. 즉, 지난 2월과 3월의 가격안정은 장기간 지속된 불황에다 IMF한파까지 겹쳐서 물가상승과 임금삭감 등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급속히 감소됨으로서 쇠고기 수요가 돼지고기로 대체됨과 동시에 원화의 가치하락으로 인해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물량이 증가된 데에서 기인된 수요부문의 단기적인 환경변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변함없는 IMF의 터널 속에서 높은 환율과 높은 이자율이 지속되고 기업의 부도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됨으로서 전반적



박 중 수 교수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인 축산물의 소비가 크게 위축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쇠고기에 대한 다양한 직거래가 실시되면서 쇠고기의 소비자 가격이 크게 낮아져 쇠고기의 대체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 일본의 경기침체로 인한 대일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 수요측면의 다양한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재는 돼지고기의 소비위축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돼지고기의 소비위축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돼지의 산지가격 하락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4월 중순이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소비위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다. 소비가 위축되더라도 농가 스스로가 그 만큼 공급을 줄일 수 있다면 시장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돼지의 생산은 매우 경직적인 뿐만 아니라 양돈농가의 생산감소는 결국 실질소득의 감소는 물론 자칫 양돈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 연계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농가가 생산을 줄이지 않고 가격안정을 통해 실질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는 물론 수요를 촉진시키는 일이다. 공급이 늘더라도 그 이상으로 수요를 창출시킬 수만 있다면 가격은 얼마든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방경제의 자유시장체제 하에서는 수요 촉진활동을 이해당사자 스스로 담당하는 것이 필연적 현상이다. 돼지고기의 수요촉진도 돼지를 생산하는 양돈농가가 담당하는 것이다. 돼지고기의 수요가 촉진되어 돼지의 값이 올라간다면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양돈산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양돈농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별 양돈농가가 직접 시장에 나가서 수요를 촉진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 여기에서 착안되어 시도되는 방법이 자조금제도에 의한 소비촉진 활동이다. 양돈 자조금제도는 개별 양돈농가가 돼지의 생산·출하량에 따라 조금씩 기금을 출연하여 공동으로 소비촉진활동을 전개하는 제도이다.

미국을 비롯한 양돈 선진국에서는 양돈 자조금제도를 통해서 농가들이 생산한 돼지고기의 수요를 스스로 촉진시키고 있다. 소비촉진 활동도 소비홍보와 광고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생산기술과 새로운 제품을 개발·연구하며 해외의 수출시장을 개발하는 부분까지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미국의 육류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육류수출협회를 상주·운영하고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축산농가가 모두 참여하는 자조금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은 타산지석이 아니다. 미국의 이러한 농축산물 소비촉진 활동은 자조금 관련법이 뒷받침하고 있다. 자조금 관련법들은 해당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상향식으로 제정되었으며 각 품목별 자조금 조성에는 해당 농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양돈 자조금은 1985년에 제정공포된 돈육소비촉진, 연구 및 소비자 정보법(pork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에 근거

**양돈 자조
금제도는 개별
양돈농가가 돼지
의 생산·출하량에
따라 조금씩 기금을
출연하여 공동으로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하는 제도
이다.**

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돼지를 생산하는 양돈농가는 물론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도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양돈농가는 돼지 판매가격의 0.25%~0.5%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수입업자는 수입육 100파운드당 0.16~0.24센트씩의 자조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양돈산업에서도 1992년부터 대한양돈협회가 주도하여 자조금 제도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자조금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 뿐 아니라 그 조성금액도 극히 미미하여 본래의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것마저도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자조금 제도가 이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대부분의 농가가 양돈 자조금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임승차자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양돈 자조금 제도는 1990년 제정·공포된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 13조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이 자조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충분한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돈 자조금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양돈자조금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새롭게 제정된 법은 자조금의 의무적인 납부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의무적인 납부방법은 양돈업을 경영하는 모든 양돈가가 자기가 생산·출하하는 돼지의 물량에 따라서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자조금을 현재와 같이 임의로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무임 편승자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전제하는 것은 의무자조금 제도의 법제화에 앞서 양돈농가가 자조금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방법,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의 제정은 양돈농가의 청원에 의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상향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생산자대표, 선돈농가들이 참여하는 자조금의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돈농가가 부담하는 자조금은 소모적 경비가 아닌 생산적 비용이다. 수요가 없는 공급이 있을 수 없으며 소비확대가 전제되지 않는 생산증가는 가격 폭락을 자초할 뿐이다.

IMF의 긴 터널은 아직도 끝이 보일 기미가 없다. 양돈산업이 IMF의 어두운 터널을 슬기롭게 통과하고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양돈가 스스로 돈육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이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의 양돈산업은 양돈농가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養豚**

양돈농가가
부담하는 자조금
은 소모적 경비가
아닌 생산적 비용이
다. 수요가 없는 공급
이 있을 수 없으며 소
비확대가 전제되지 않
는 생산증가는 가격
폭락을 자초할 뿐
이다.

